

제347회 임시회
2016. 4. 27.(금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6년 4월 18일
- 회부일자 : 2016년 4월 19일

3. 개정이유

-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 근거 마련
- 관련 법령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

4. 주요내용

- 용어 정의 신설 (안 제2조)
- 시설 임대료 납부 및 반환 근거 신설 (안 제9조)
- 관리비 납부 및 정산 근거 신설 (안 제10조)
- 대여료 부과기준 정비 (안 별표3)

5. 검토의견

- 동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14조 및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“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”의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안으로,
- 기존 상위법령이었던 「여성발전기본법」이 폐지되고 「양성평등기본법」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, 충청북

도여성발전센터 미래여성플라자의 완공으로 추가 설치된 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< 충북미래여성플라자 현황 >

- 연 면 적 : 2,575㎡(지하1, 지상3)
 - 지하1층 : 기계실 / 1층 : 문화공간 / 2층 : 교육.여성활동 / 3층 : 다목적실
- 사 업 비 : 76억원(국비13, 도비63)
- 추진상황
 - 건축물 준공 : '16. 1. 25(임시사용승인)
 - 시설 인수.인계 : '16. 3월(여성정책관⇒ 여성발전센터)
 - 조경 및 주차장 포장 : '16. 5월 / 개관식 : '16. 5월말(예정)

-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- 안 제2조에는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에 대한 “사용료”를 수강료, 대여료, 임대료, 관리비 등으로 세분화 하여 정의하였고,
 -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와 [별표1], [별표2]에는 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 수강료와 관련한 납부 및 면제 , 수강료 반환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7조, 제8조와 [별표3], [별표4]에는 대여료 납부 및 면제와 반환에 대해 규정하였고,
 - 안 제9조, 제10조와 [별표5]에는 시설에 입주하는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의 납부, 반환, 정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음.
 - 또한, 안 제11조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을, 안 제12조는 도지사의 시설 사용 취소 명령 대상 범위를,

- 안 제13조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83조에 따라 사용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음.
 - 안 제15조에는 사용시설에 대한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 징수 및 변상에 대한 조치를 제외하고 안 제3조부터 제13조까지의 사무권한을 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 소장에게 위임토록 규정하였음.
-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상위법령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법리적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며, 사용료 금액도 타 시·도와 형평을 맞춘 수준으로 책정해 도민의 이용시 부담 최소화 및 공익적 목적 달성에 기여토록 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다음의 조례안 규정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- 첫째,

조례안 제2조(정의) -----

1. -----

2. -----

3. “사용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조, 제6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수강 신청을 하거나 사용 허가를 받은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.

가. 교육수강생

나. 관람객

다. 시설을 임차하는 단체 및 개인

라. 시설에 입주하는 단체 및 개인

마. 그 밖에 공익 달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문제점

조례에서 규정될 필요가 있는 “사용자”의 해당 범위는 가 ~ 라목 까지에 모두 포함되는 바, 마목의 규정은 불필요함.

수정방향

안 제2조 제3호 마목을 삭제함.

- 둘째,

조례안

제3조(수강료의 납부 및 면제) ① -----

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
2.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서 정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용하는 경우
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의 적용을 받는 보호대상자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5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장애인
6. 그 밖에 공익 달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문제점

- 안 제3조 제2항 “도지사”는 약칭 사용 표기 필요
- 같은 조 제2항의 수강료 면제 대상은 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교육 수강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,
- 사용료 면제 대상자의 범위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단체장의 재량범위를 제한하고, 특히 장애인의 경우, 3급 이상은 중증 장애인으로 센터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, 4~6급의 경증 장애인을 면제 대상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.

수정방향

- 안 제3조 제2항을 “충청북도지사(이하 ” 도지사 “라 한다)는 ~ ”
으로 수정하고,
- 같은 조 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
사료됨
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 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
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4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
 5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
 6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
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
 7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 8. 「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세 자
녀 이상 가정에 속하는 사람

- 셋째,

조례안

제7조(대여료의 납부 및 면제) ① -----

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료를
면제할 수 있다.

1. -----
2. -----
3. 그 밖에 공익 달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문제점

센터는 양성평등 교육, 여성정책 조사 및 연구 등 센터
의 설치 목적에 부합한 행사 등에 대해서도 시설 대여료를 면제해
줄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.

수정방향 제3호에 면제 대상 범위를 “센터의 설치 목적 또는 공익 달성을 위해~”로 수정함.

- 넷째,

조례안 제9조(임대료의 납부 및 반환 등) ① -----

② -----

③ -----

④ -----

⑤ 도지사는 시설에 입주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거를 명할 수 있다.

1. -----

2. -----

3. -----

4. -----

5. 그 밖에 도지사가 양성평등 및 도정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

문제점 도지사의 퇴거 명령 규정에 있어 “그 밖에 도지사가 양성평등 및 도정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~”는 그 범위가 구체적이지 못해 단체장의 재량범위가 과다함.

수정방향 제5호를 삭제함.

- 다섯째,

조례안 제12조(시설 사용의 취소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 사용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

2.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

3. 사용허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
 4.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-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사용의 취소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도지사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.

문제점

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인해 시설 사용을 취소하는 조치 외에 제2항에서 시설사용 취소로 인한 손해 발생분에 대해 사용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도록 명시한 규정은 안 제13조에 시설의 사용 중단 시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과 제14조에 변상에 관한 규정과의 중복내지는 과도한 규제임.

수정방향

제2항을 삭제함.

<참고자료 : 타시도 여성관련 시설 사용료 현황>

시도명	명칭	사용료(원/1h)		기타 공과금(원/1h)
		대강당(홀) 등 유사시설	강의실(실습실) 등 유사시설	
17개 시도				
<u>충북</u>	여성발전센터	25,000	10,000	2~30,000
<u>서울</u>	여성플라자	85,000	30,000	-
	여성발전센터	20,000	20,000	-
<u>부산</u>	여성회관	27,000	7,500	15,000
	여성문화회관	30,000	30,000	26,000
<u>인천</u>	여성문화회관	40,000	30,000	-
	여성의광장	40,000	40,000	-
	여성복지관	30,000	15,000	20,000
<u>울산</u>	여성회관	30,000	-	20,000
<u>세종</u>	여성회관	15,000	10,000	-
<u>경기</u>	여성비전센터	40,000	40,000	-
<u>강원</u>	한국여성수련원	125,000	10,000	-
<u>제주</u>	설문대여성문화센터	15,000	10,000	15,000
대구	동부여성문화회관	20,000	10,000	15,000
광주	일가정양립지원본부	25,000	-	20,000
대전	여성가족원	50,000	30,000	50,000
충남	여성정책개발원	-	-	-
전북	여성교육문화센터	100,000	40,000	50,000
전남	여성플라자	25,000	15,000	15,000
경북	여성정책개발원	-	-	-
경남	여성능력개발센터	-	-	-